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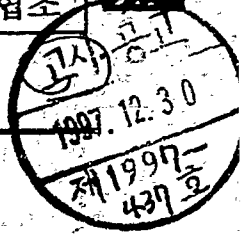
# 서울특별시

우)100-744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/전화: (02)3707-9615~6/전송 3707-9629  
 처리부서: 공원과(서소문별관 제1동 8층) 담당: 하재호

문서번호 공원58215-1033  
 시행일자 1997.12.30.  
 (경유) (제1안)  
 수신 내부결재  
 참조

취급		시 장
보존		
공원녹지기획관	전 결	
공 원 과 장		법무담당관
공원개발계장		
기안	하재호	협조

원본대조필



## 제목 도시계획시설(답십리근린공원) 조성계획 변경결정

1. 동대문구 공녹58209-1640('97.12.22)호와 관련입니다.

2. 건설부고시 제1977-138호('77. 7. 9)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공원)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-189호('97. 6. 4)로 조성계획이 결정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산 2-9번지 일대 답십리근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변경(안)이 우리 시 도시공원위원회 '97년도 제4차('97.10.22) 및 제5차('97.11.25) 심의에서 원안가결되었으므로,

3. 도시공원법 제4조,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과 행정권한의위임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41조제7항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.

덧붙임 : 1. 고시문(안) 1부.

2. 도시계획시설(답십리근린공원) 조성계획 변경결정 도서 각 1부. 끝.

# 서울특별시

(제2안)

수신 건설교통부장관

참조 도시관리과장

제목 도시계획시설(답십리근린공원) 조성계획 변경결정 보고

1. 건설부고시 제1977-138호('77. 7. 9)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공원)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-189호('97. 6. 4)로 조성계획이 결정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산 2-9번지 일대 답십리근린공원에 대하여,

2.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과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 관한규정 제41조제7항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하 이를 보고합니다.

원본대조필

덧붙임 : 1. 고시문 사본 1부.

2. 도시계획시설(답십리근린공원) 조성계획 변경결정 도서 1부 끝

# 서울특별시

(제3안)

수신 총무처장관

참조 법무담당관

제목 관보게재 의뢰

우리시 도시계획시설(답십리근린공원)에 대하여 조성계획 변경결정 하고 관보게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고시번호 :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-437호('97. . .)

나. 고시명 : 도시계획시설(답십리근린공원) 조성계획 변경결정

다. 법적근거 :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

덧붙임 : 고시문 사본 및 조서 각 2부. 끝

# 서울특별시

(제4안)

수신 동대문구청장

참조 공원녹지과장

제목 도시계획시설(답십리근린공원) 조성계획 변경결정 통보

1. 공녹58209-1640호('97.12.22)와 관련입니다.
2. 도시계획시설(답십리근린공원) 조성계획 변경결정 요청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과 행정권한의위임및 위탁에관한규정 제41조제7항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하고 이를 통보 하니, 관계도서 사본을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일 것이며.
3.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지적승인 등 도시계획 관련업무 처리에 철저를 가하기 바랍니다.

덧붙임 : 1. 고시문 사본 1부.

2. 답십리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도서 1부. 끝.

원본대조필

서울특별시

# 고 시(안)

제 1997-431호	제 1997-431호	제 1997-431호
제 1997-431호	제 1997-431호	제 1997-431호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7-431호

## 도시계획시설(답십리근린공원) 조성계획 변경결정

원본대조필

1. 건설부고시 제1977-138호('77. 7. 9)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공원)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-189호('97. 6. 4)로 조성계획이 결정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산 2-9번지 일대 답십리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와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1조제7항에 의거 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원과(전화:3707-9615)와 동대문구 공원녹지과(전화:920-4395)에 각각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1997년12월 일

## 서울특별시장

- 가. 도시계획시설(답십리근린공원)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: 별항
- 나. 도시계획시설(답십리근린공원) 조성계획 변경결정 도면 : 생략  
(서울특별시 공원과와 동대문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습니다.)